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22
----------	-------

발의연월일 : 2026. 6. 18.

발 의 자 : 서명옥 · 고동진 · 이현승
조은희 · 박성훈 · 강명구
이인선 · 이종배 · 배준영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위험성과 과급력은 매우 광범위함.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인지력과 판단능력을 저해하여 정상적인 운전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여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급격히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의 음주운전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으로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여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광범위한 위험성과 치명성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인식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148조의2제1항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중 “0.03퍼센트 이상”을 “0.0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를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0.03퍼센트 이상”을 각각 “0.0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56조제11호·제12호 및 제12호의2 중 “자전거등을”을 각각 “자전거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u>0.03퍼센트 이상인</u> 경우로 한다.</p> <p>⑤ · ⑥ (생략)</p> <p>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u>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u>)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p> <p>1. · 2. (생략)</p> <p>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p>	<p>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0.02</u>퍼센트 이상-----.</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148조의2(벌칙) ① ----- ----- ----- -----<u>이하</u>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2. (생략)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 ⑥ (생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0. (생략)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0.02퍼센트 이상-----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0.02퍼센트 이상-----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6조(벌칙) -----

-----.

1. ~ 10. (현행과 같음)

11. -----
-----자전거를-----

12. -----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생략)

-----자전거를-----

12의2. -----

-----자전거를-----

13. (현행과 같음)